

이 보도자료는 2018. 6. 7.(목)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공보담당관 자장겸사 심우정  
전화 053-570-4302 / 팩스 053-570-4556

## 보 도 자 료 2018. 6. 7.(목)

자료문의 : 형사3부장검사실  
전화번호 : 053-570-4430  
주최임자 : 형사3부장검사 이정봉

제 목

### 가상화폐 광풍에 편승,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 적발 - 대표 등 4명 구속 및 관련 공범 27명 불구속 기소 -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17. 9.경부터 '18. 3.경까지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 국내외에서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함께 10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월드'의 대표 등 주범 4명을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 이번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비교적 소액인 초기 투자금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불법 다단계 조직을 조기에 적발하여 국내외의 대규모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 개발자를 추적·검거하여 일본에 소재한 서버의 내용까지 확인 함으로써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였음
-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임

## I 사건 개요

※ 피고인 별 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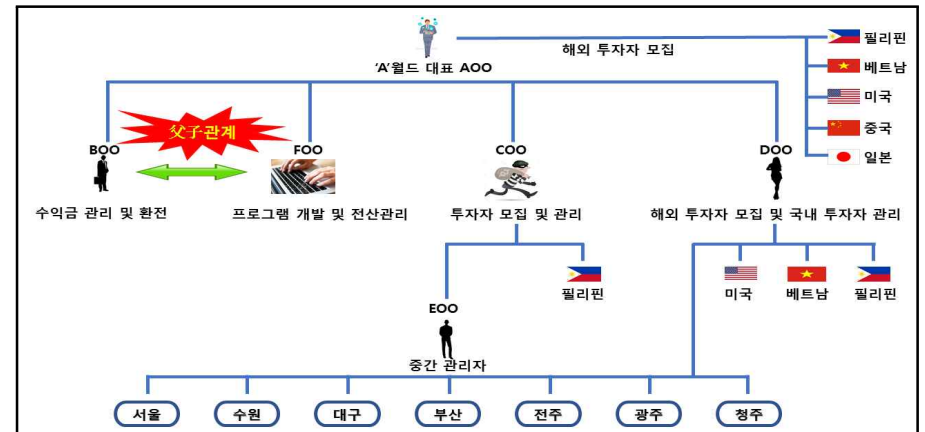
### 1 수사 착수 경위

- 별건 사기 고소 사건 수사 중 '○○○월드'에 대한 단서 포착, 계좌추적,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게시물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 수집
- '○○○월드'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로, 초기진입 비용이 27만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피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착수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입비 27만 원으로 98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

### 2 주요 피고인

- A○○(53세, '○○○월드' 대표, 일명 '스티브 강'), 구속기소
- B○○(59세, 수익금 관리 및 환전), 구속기소
- C○○(47세, 투자자 모집 및 관리, 일명 '테이'), 지명수배
- D○○(여, 51세, 해외 투자자 모집, 일명 '그레이스 리'), 구속기소
- E○○(50세, 모집책 중간관리), 구속기소
- F○○(35세,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관리, B○○의 자), 불구속 기소

<조직도 및 역할분담>



### ③ 수사 경과

- '18. 4. 5. 대구, 창원 사무실 압수수색
  - 관련자 조사, 휴대폰·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대표 및 임원진 인적사항 확인 후 출국금지
- '18. 4. 23. ~ 4. 28. 중간관리자 및 대표 구속
- '18. 5. 9. ~ 5. 17. 임원 2명 추가 구속, 중간관리자 및 대표 구속 기소
- '18. 5. 18. ~ 5. 28. 프로그램 개발자 검거 및 일본 소재 서버 접속 실체 확인
  - ※ 총 투자금 모집 규모가 109억 원 상당에 이름을 확인
- '18. 5. 28. ~ 6. 7. 임원 2명 구속 기소 및 27명 불구속 기소
  - ⇒ 총 32명 인지, 4명 구속, 1명 지명수배
  - ※ 압수·수색 총 7회, 2,000여개 계좌추적, 200여개 통화내역 분석

### ④ 범죄사실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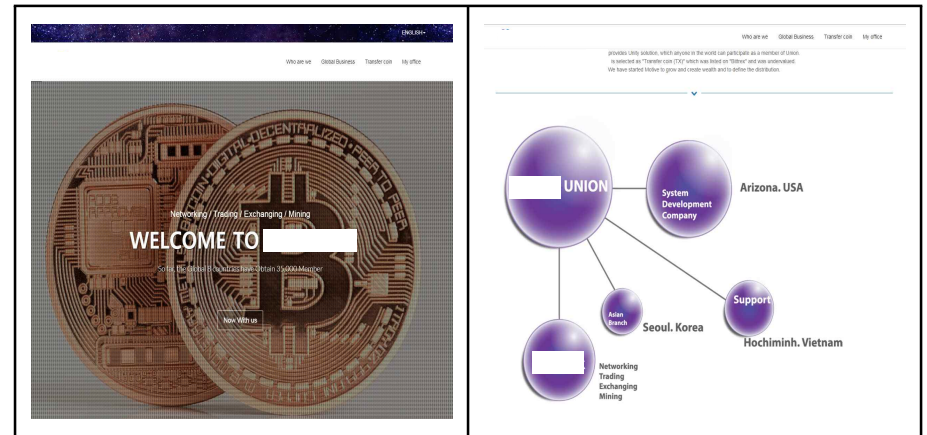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경부터 2018. 3. 2.경까지,
  - 사실은 '○○○월드'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수당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 등으로 지급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2만여 명으로 부터 합계 109억 7,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 [사기]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27만원의 가입비를 교부받아 1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코인'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외의 후발 가상화폐를 총칭하는 알트코인(Alternative coin) 중 하나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만 환전이 가능하며, 2018. 6.경 기준 시가는 한화 900원 상당임

## Ⅱ 주요 수사 내용

-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로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현혹
  - "“○○○월드'는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로 수당을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지급하는데,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현혹
  - ※ 대표, 임원들이 '스티브 강', '그레이스 리', '테이' 등의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였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을 영어로 기재

<'○○○월드' 인터넷 홈페이지>



-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월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으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함
- 원금보장(CDR : Coins of Damage Relief)을 약속하면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였으나 투자원금보장 및 고수익은 사실상 불가능

- 14일 동안 해당 계정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금 상당을 ◇◇◇◇ 코인으로 환불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코인의 가치상승을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을 기망

- 실제 없는 유령 회사로, ◇◇◇◇코인의 가치상승 및 유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어 단기간 내 가치상승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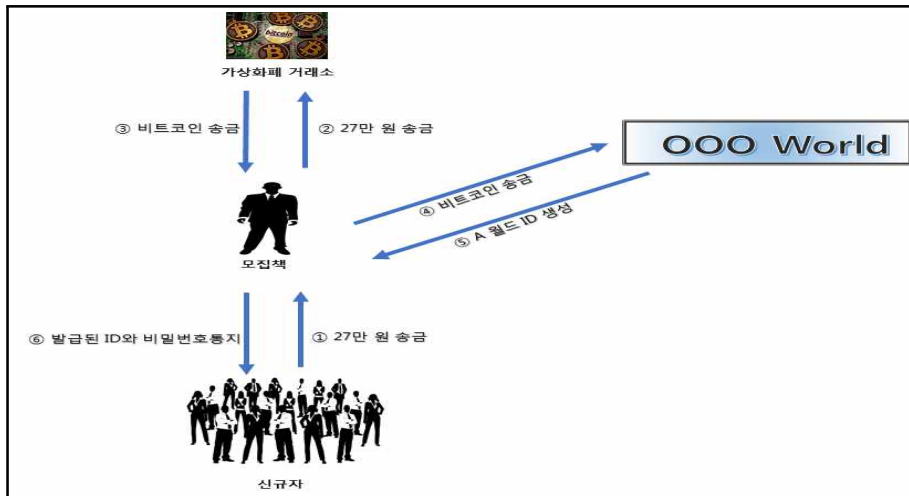
- 결국 가치 상승으로 인한 고수익 및 투자원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투자금 중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 프로그램 개발자, 임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다단계 방식 수익배분으로 운영

※ 후순위 투자자의 감소로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

●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하고, 다단계 수법을 동원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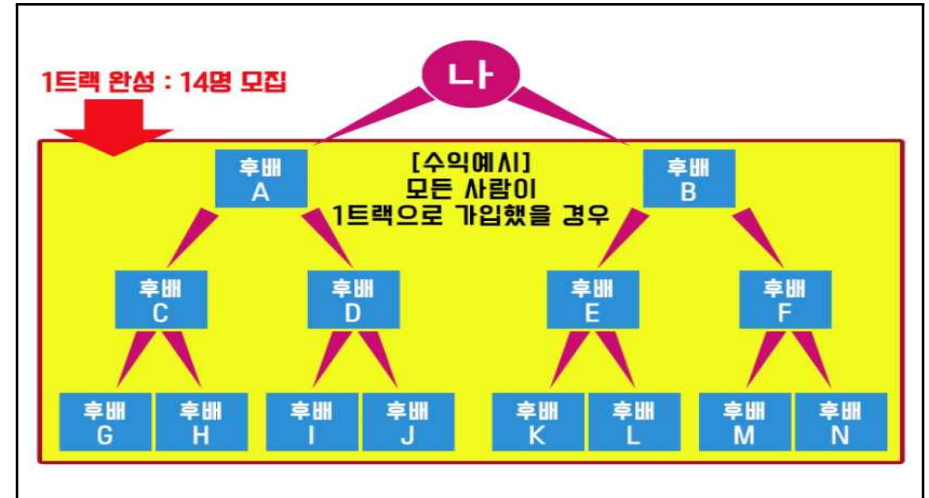
- 신규 투자자가 220US달러(27만원 상당)를 모집책에게 송금하면 모집책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월드'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입금시키는 구조

<회원가입 구조>



- '나' 밑으로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이 완성되어 총 8트랙까지 모집할 수 있으며, 1트랙 가입비 220US달러(한화 27만 원 상당) 중 20US달러는 회사로, 200US달러는 상위 투자자에게 재분배되는 구조

<바이너리 방식 다단계 구조 >



- 중간 모집책들에게 센터피를 지급하고, 2박 3일 베트남 여행권을 프로 모션으로 제공하며 투자수신 독려

● 진입 장벽을 낮춘 소액 투자를 미끼로 하여 단기간에 전국 및 해외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간모집책들을 통해 비교적 소액인 가입비 한화 27만원만 지급하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절차의 번거로움 및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6개월만에 국내 및 미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2만 명의 투자자를 확보

- 피해자들 중에는 다단계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은퇴한 고령자, 주부, 무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직업적 특성상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통신판매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미용사, 목사 등도 피고인들의 주된 타겟층이 됨

### III 참고사항

#### 1 신속한 수사로 대규모 피해 확산 조기 차단

- 대표 및 임원들을 신속하게 체포,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까지 추적 검거하여, 일본에 소재한 서버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한편, 동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 범행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

※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유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으나 본건 수사로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음

#### 2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 수익금 관리에 사용하였던 가상화폐 외부 전자지갑(수익금인 ◇◇◇◇코인 등 1억원 상당 저장)을 압수하였고 추후 몰수 구형하여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

<수익금이 저장된 가상화폐 외부 전자지갑>



※ 최근 대법원에서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시가 있었으나, 본건의 경우 범죄수익규제법상의 중요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 몰수 구형 예정

- ☞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전자기록 등을 몰수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고, 전자지갑에 저장된 인증정보, 비트코인 등은 전자화된 파일로 볼 수 있음



(별첨)

## 피고인별 범죄사실 요약

순번	피고인	역할 및 지위	죄명	범죄금액(원)	처분
1	AOO (55세)	대표 (조직 설립)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09억	구속기소 (18. 5. 11.)
2	BOO (59세)	임원 (수익금 관리 및 환전)			구속기소 (18. 5. 31.)
3	COO (47세)	임원 (투자자 모집 및 관리)			기소중지(지명수배)
4	DOO (51세)	임원 (해외투자자 모집 및 국내 투자자 관리)	107억	구속기소 (18. 5. 28.)	
5	EOO (50세)	중간 관리자 (센터장 관리 및 투자설명)	38억	구속기소 (18. 5. 11.)	
6	FOO (35세)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 유지 관리	109억	불구속 기소 (18. 5. 31.) ※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父子 B00 구속된 점 참작	
7	GOO (49세)	중간 모집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9억	불구속 기소 (18. 5. 31~ 6. 7.)
8	HOO (47세)			28억	
9	IOO (여, 54세)			16억 7천만	
10	JOO (56세)			15억 원	
11	KOO (여, 59세)			9억 1천만	
12	LOO (55세)			8억 5천만	
13	MOO (57세)			8억	
14	NOO (여, 54세)			7억 7천만	
15	O00 (43세)			7억 5천만	

16	POO (60세)	중간 모집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6억 6천만	불구속 기소 (18. 5. 31~ 6. 7.)
17	QOO (53세)			5억	
18	ROO (47세)			5억	
19	SOO (여, 45세)			5억	
20	TOO (53세)			5억	
21	UOO (63세)			5억 미만	
22	VOO (44세)				
23	WOO (58세)				
24	XOO (여, 49세)				
25	YOO (여, 32세)				
26	ZOO (51세)				
27	1OO (58세)				
28	LOO (49세)				
29	DOO (48세)				
30	EOO (여, 54세)				
31	MOO (여, 28)				
32	BOO (60세)				